

#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, 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## 1. 대상자

성명	생년월일	주소	발급기한	비고
권0은	2008. 12. 08.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6	2026. 12. 31.	
이0을	2008. 12. 10.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24-9	2026. 12. 31.	
김0우	2008. 12. 16.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7	2026. 12. 31.	
안0현	2008. 12. 23.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40	2026. 12. 31.	

2. 공고기간 : 2025. 12. 18. ~ 2026. 01. 05.

## 3. 준비물

-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(3.5cm×4.5cm)
- 신분증명서 (학생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)
-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부 또는 모 및 직계가족(성년자)과 동반 방문

## 4. 유의사항

- 상기 표시된 기간이 지나 신청하실 경우,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유학, 해외여행, 입원, 수감 등의 사유로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엔,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(☎ 문의전화: 031-6193-6882 담당자: 홍세연)

2025년 12월 18일

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장

